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58
----------	-----

제출연월일 : 2009. 11 .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9. 9. 25. ~ 10. 15.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채권매입 면제대상(제5조의3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생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td> <td> 가. ~ 카. (생략) <신설>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다. (생략) </td> </tr> </tbody> </table>	구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생략)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가. ~ 카. (생략) <신설>		다. (생략)	<p>[별표 2] 채권매입 면제대상(제5조의3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td> <td> 가. ~ 카. (현행과 같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파.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구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현행과 같음)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가. ~ 카. (현행과 같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파. (현행과 같음)
구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생략)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가. ~ 카. (생략) <신설>																
	다. (생략)																
구분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1. (현행과 같음)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	가. ~ 카. (현행과 같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파.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5.21>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3일
3. 상 정 일 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12. 17)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김기황)

1. 제안이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2).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임묵)

○ **본 개정 조례 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촉진을 위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